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보험과 손주형(02-2100-2960)	담당자	안남기 사무관 (02-2100-2963)	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진태국(02-3145-7460)		태현수 사무관 (02-2100-2962)	
	서울보증보험 부장 황의탁(02-3671-7333)		문형진 팀장 (02-3145-7466)	
			서울보증보험 팀장 최혁재(02-3671-7332)	

제 목 :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-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-

◇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마련

① 「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 : 집주인 동의 면제

-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(개인정보 수집·활용 등)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
-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가능 → 번거로운 절차·서류 해소

② 서울보증의 '전세금 보증신용보험' 보험료 인하

-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,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전세금의 0.1920%에서 0.1536%로 인하

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(공인중개소) 10배 확대

-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(내규)을 대폭 완화하여,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

* 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

1. 추진배경

□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

* 반면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

○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

*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,400가구(표본)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→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"임대인 동의(49.5%)"

□ 전세가격 및 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

* 전세가격지수(감정원, 전국, 기말, 15.6월=100) : ('13)94.2, ('14)97.4, ('15)102.2, ('16)103.5
 전세價/매매價(감정원, 전국, 기말, %) : ('13)61.8, ('14)62.9 ('15)66.0 ('16)66.8

2.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

□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

[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: 집주인의 동의 면제]

□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,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⇒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



